##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일반교통방해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


[수원지방법원 2010. 10. 13. 2008고단505]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 1외 2인

【검 사】임은정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권숙권

【주문】

]

피고인 1, 피고인 3을 각 징역 8월에,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외 3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(공동 재물손괴)의 점과 일반교통방해의 점 및 피고인 1, 피고인 2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[이유]

1

[이유]

[이유]

1